#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# 검 토 보 고 서

**1. 제 출 자 : 성주군수**

**2. 개정이유**

○ 성주군의회 의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에 위배되는 군의회 의장의 의원 추천규정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**3. 주요내용**

○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에 위배되는 군의회 의장의 의원 추천 규정 개정**(안 제3조 제3항 제2호 가목)**

**-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⇒ 군의회 의원 1명**

**4. 관련법령**

○ 관련판례 :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(대법원, 2007추141,2009.12.24)

○ 관련공문 : 기획감사실-5253(2010.10.24)각종위원회 군의회의원 위촉관련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통지

**5. 검토의견**

○ **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**

○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성주군귀농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

○ 2009년 2월 25일 조례 제1923호로 제정한 동 조례에 의하면 군수가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한 규정은 의장이 개인자격으로 군수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당연히 개정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 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**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#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
# 검 토 보 고 서

**1. 제 출 자 : 성주군수**

**2. 제안이유**

○ 성주지역농산물의 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건립한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

○ 운영법인인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사업장안정화 도모와 운영에 활력을 줌으로써 지속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**3. 주요내용**

○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타의 운영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대하여

○ 2011. 4. 1.~2013. 3. 31.까지 2년간 사용료를 면제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함.

**4. 관련법령**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2항

○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

**5. 검토의견**

○ **제출자, 제안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**

○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값싼 농산물의 범람으로 농업·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, 우리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경쟁력 제고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립을 위하여

○ 우리 군이 토지, 건물, 기계류 등 고정자산, 공시지가 등에 의한 평가액 약 40억 5,800만원과 성주조합합동법인이 유동자산, 현금 8억 5,500만원을 투자하여, 2007. 3. 6 공판장을 개장하여 현재까지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해오고 있음에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검토한 결과

○ 2007년도에 8억 9,800만원의 적자를 봤으나, 200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흑자 운영하여 2010년까지 총 6억 4,300만원의 순이익이 누적됐으나, 아직도 2억 5,500만원의 미처리 결손금이 있으므로

○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활성화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유통구조를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2011. 4. 1.~2013. 3. 31.까지 2년간 사용료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**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